

〈 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2020. 1.



환경부

# 목 차

## 1. 사업목적 및 개요

가. 목 적	1
나. 근 거	1
다. 사업내용	1
라. 운영주체별 역할	1

## 2. 보조금 집행 기준

가. 보조금 지원 대상	2
나. 보조금 지원 차량	2
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2
라. 의무 운행기간	3
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3

## 3. 보조금의 집행 절차

가. 보조금 집행 체계	4
나. 보조금의 집행 절차	5

## 4. 보조사업 관리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8
나. 보조사업의 집행상황 보고	8
다. 보조사업의 완료 보고	8

# 1. 사업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개발 유도
-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나. 근 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

## 다. 사업내용

- 사업명 :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 사업비 : 총 12,650백만원(국비 기준)

## 라. 운영주체별 역할

- 환경부
  -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제·개정
  - 광역자치단체별 보조금 예산 배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사업 운영실태·시행결과 평가 등
  - 국고보조금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지방비 확보여부 등)
- 한국환경공단
  - 전기차(전기이륜차 포함) 보조금 시스템 운영
  - 전기이륜차 보조금 시스템관련 콜센터 운영
  - 보조금 지원 차량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 등록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집행(자치단체 보조사업)

## 2. 보조금 집행 기준

### 가.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보조금 지원대상 전기이륜차를 신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신고할 경우
  -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보조금 미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법인·단체 구매시 수량 제한 및 사업목적 증빙 서류(사업계획서 등) 등에 대한 조건 부여 가능

### 나. 보조금 지원 차량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이륜차
  - ①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②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기이륜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보조금 지원 이륜차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 다. 보조금 지원 기준 및 단가

- 전기이륜차 유형·규모,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별표 1과 같음
  - 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구매시 유형·규모별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함
    - ※ 폐차 여부는 사용폐지 증명서(필수)를 기본으로 하되 폐차장 증명서(확인증·폐차 사진 등)로 보완하여 확인
  - 모든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 50:50의 지원 비율을 유지하여야 함

구분	유형별	일반형				기타형
	규모별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최대지원액(만원)		210	260	290	330	330

\* 전기이륜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 라. 의무 운행기간

-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하여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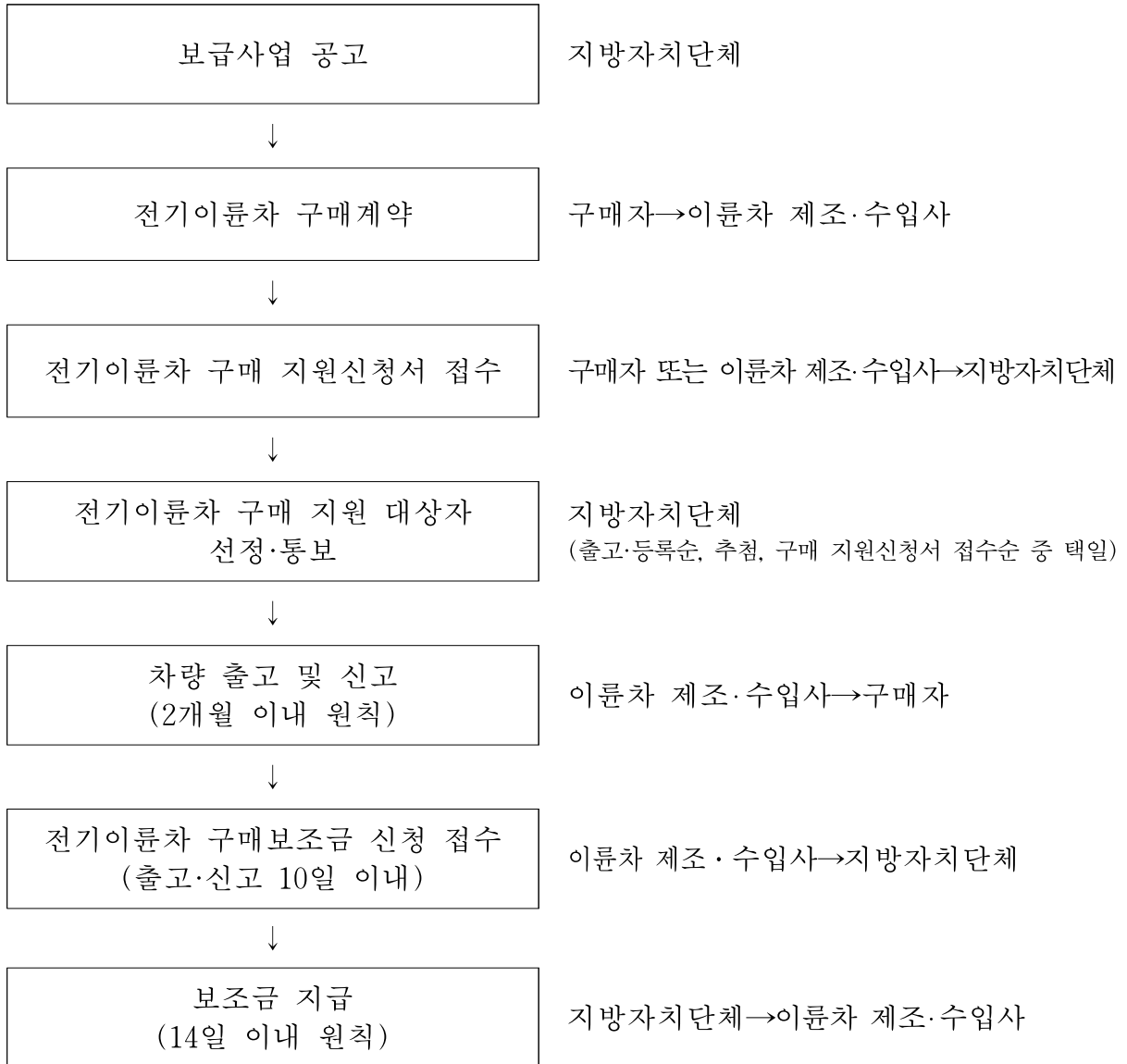
## 마.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목적 외 사용금지 등)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법령의 규정, 교부결정의 내용 등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특히, 전기이륜차 구입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발견되는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부정수급이 확정되는 시점에 관련 보조금(이자 포함)을 곧바로 환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하여야 함.

### 3. 보조금 집행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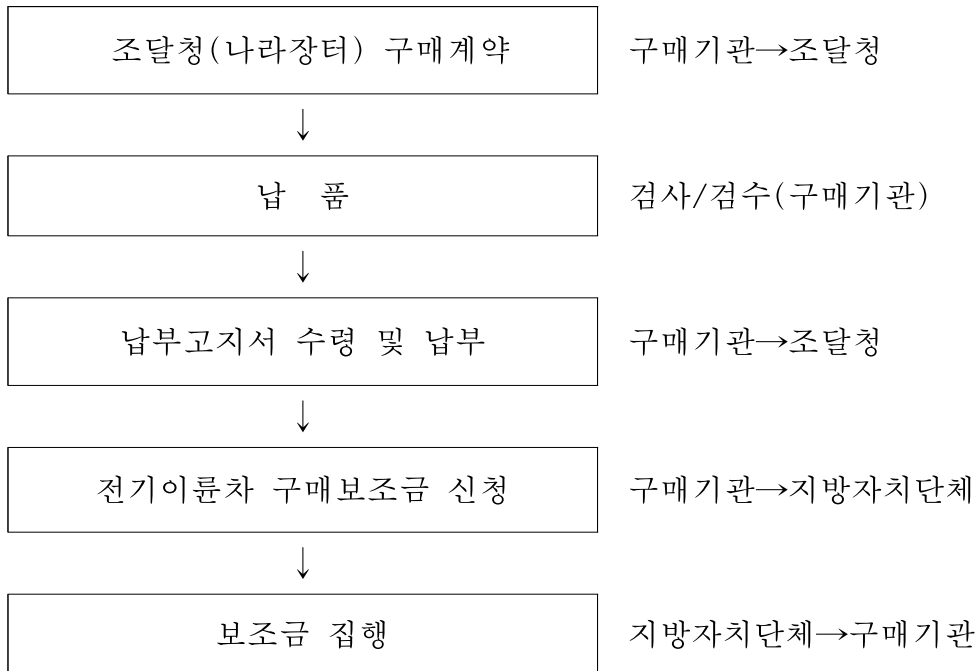
#### 가. 보조금 집행 체계

##### ○ 민간부문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납부하고, 이륜차 제조·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국비보조금+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공공부문



-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에 대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구매기관은 구매계약 전후로 보조금 잔여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자체 예산으로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나. 보조금 집행 절차

□ 기본 원칙

- 전기이륜차 보조금 집행을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 내 보조금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 시스템으로 처리하고자 않을 경우 환경부 승인을 득해야만 함

□ 민간 부문

- 보급사업 공고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급사업 공고

- 공고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조건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 전기이륜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2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조·수입사에 제출
    - ※ 상기 사항은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 가능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
-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출고·등록순, ②추첨, ③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 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구매신청자 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 통보
      -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에게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을 반드시 통지할 것
    - ② 지방자치단체는 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가능
    - ③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로 지원 대상자 선정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배달용, 내연기관이륜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 전기이륜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물량의 최소 20% 이상을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3분기까지 보조금 우선순위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만, 4분기에는 우선순위 물량 중 미집행된 물량은 우선순위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보조금 집행

- 제조·수입사는 출고된 전기이륜차에 대해 구매자가 사용신고하면 집행관련 증빙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지 증빙서류(지방보조금이 있는 경우),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 지방자치단체는 제출된 증빙서를 검토 후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지정계좌의 수를 최소)로 보조금 지급(원칙적으로 14일 이내)

□ 공공 부문

○ 차량 구매

- 공공기관은 조달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지 2호의 신청서와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출고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전기이륜차 신고필증 외 추가 서류 요청 지양

○ 보조금 신청

- 기초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시·군·구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신청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에 따라 환경부에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환경부는 광역자치단체의 보조금 신청내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

- 공공기관에 시·군·구비를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공공기관에 시·군·구비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4. 보조사업 관리

### 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관할 지역 내에 전기이륜차를 보급하는 제작·수입사가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할 시 이를 보완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나. 보조사업의 집행상황 보고

- 보조사업자는 전기이륜차 보급 관리대장(별지 3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월 종료일부터 5일 내에 환경부장관에 보고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집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4호 서식)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다. 보조사업의 완료 보고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실적(별지 제5호 서식)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조사업 수행기관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집행, 준공 및 정산처리하고,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사업 완료 후 반납 조치하여야 함

[별표]

1. 2020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출방식
2. 2020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별지 서식]

1.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3.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관리대장
4.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진행보고)
5. 보조사업 수행 및 예산집행 실적보고(완료보고)

[별표 1]

2020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산출방식

- 전기이륜차의 보조금은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용량, 등판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보조금 산출 방식은 다음과 같음

$$\text{연비보조금}(\text{규모별금액} \times \text{연비계수}) + \text{배터리보조금}(\text{규모별금액} \times \text{배터리계수}) + \text{등판보조금}(\text{규모별금액} \times \text{등판계수})$$

- 연비와 배터리, 등판 보조금은 규모·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각 보조금의 합계는 규모·유형별 최대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음

구분	경형	소형	중형	대형·기타형
연비(25%)	52	65	72	82
배터리(40%)	84	104	116	132
등판(35%)	74	91	102	116
최대보조금	210	260	290	330

- 연비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평균가중연비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연비를 말함
  - \* 연비계수 = 가중연비 ÷ 평균가중연비
  - 가중연비는 전기이륜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연비를 말함
    - \* 가중연비 = (상온연비×0.75) + (저온연비×0.25)
    - \* 상온(저온)연비 = 1 ÷ 상온(저온)소비율
  - 평균가중연비는 보조금 지원 차량의 가중연비 평균을 말함
    - \* 평균가중연비 비교대상 차량은 2019.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단, 2020년에는 2017년 인증차량 포함)
    - \* 기타형은 '승용형'과 '화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
- 배터리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배터리용량에 따른 가중치를 말함
  - 배터리계수 = (0.3×배터리용량) - 0.05
    - \* 배터리 용량 1.5kWh 미만 0.4, 4.0kWh 이상 1.3

○ 등판계수는 보급 대상 차량의 평균가중등판 대비 해당 차량의 가중등판을 말함

\* 등판계수 = 가중등판 ÷ 평균가중등판

- 가중등판 전기이륜자동차의 저온성능을 반영한 등판능력을 말함

\* 가중등판 = (상온등판×0.75) + (저온등판×0.25)

- 평균가중등판은 보조금 지원 차량의 가중등판 평균을 말함

\* 평균가중등판 비교대상 차량은 2019.9.30 까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시험'을 완료한 차량에 한하되, 해당 차량 평가시험 완료일로부터 2년 경과된 차량 및 단종 차량은 제외(단, 2020년에는 2017년 인증차량 포함)

\* 기타형은 '승용형'과 '화물형'으로 구분하여 비교

□ 전기이륜차의 연비 및 배터리용량, 등판 등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행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사용

[별표 2]

**2020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일반형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경형	그린모빌리티	VALENCIA	23.55	2.16	29.50	167
		SEBIA	22.40	3.02	29.30	186
	에코카	LUCE	21.87	1.92	26.03	150
	와코	2K2(E5)	22.32	2.52	31.20	178
		2K2(E6)	28.07	1.68	40.25	189
	비엠모터스	코알라	22.25	2.30	24.23	156
	동양모터스	빈티지클래식	19.98	4.32	34.95	210
	시엔케이	DUO	22.81	2.52	45.38	210
		DUO ALPHA	21.31	2.02	50.48	206
	대림오토바이	EG300	24.60	2.16	37.68	188
	인에이블 인터내셔널	NIU-Npro	26.67	2.10	27.48	168
한중모터스	Z3	28.88	1.56	24.78	153	
소형	씨엠파트너	썬바이크(II)	24.32	4.56	23.60	260
	엠엔에스피	M5000	23.41	4.32	39.25	260
	성지기업	WIND-K1	25.25	2.40	34.50	234

대형·기타형

구분	제조·수입사	차종	가중연비 (km/kWh)	배터리용량 (kWh)	가중등판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대형·기타형	그린모빌리티	MOTZ-FAMI	10.97	4.53	26.83	330
		DELI-T	12.08	4.50	30.83	330
		MOTZ TRUCK	10.10	3.89	33.53	330
		DELI-M	12.05	4.54	30.83	330
		DELI-D4	11.25	4.53	26.28	330
		DELI-D5	10.84	4.50	36.68	330
		DELI-Q5	10.35	4.54	35.83	330
	대풍	Echo-ev2	10.60	4.08	22.75	319
	썬미시스코	R3G	9.66	7.78	34.70	330
	시엔케이	TRIO	14.54	3.60	41.58	330
	성지기업	WIND-K2	18.35	2.40	44.25	330







(별지 제3호 서식)

전기이륜차 보급실적 관리대장

시군명	이름 (법인명)	차종	수량	차대 번호	차량 번호	차량신고 일자	지출 일자	차량* 가격	보조금 (a+b+c+d)	국비 (a)	도비 (b)	시군 비(c)	추가 보조금 (d)	자부담	환경부 예산도



